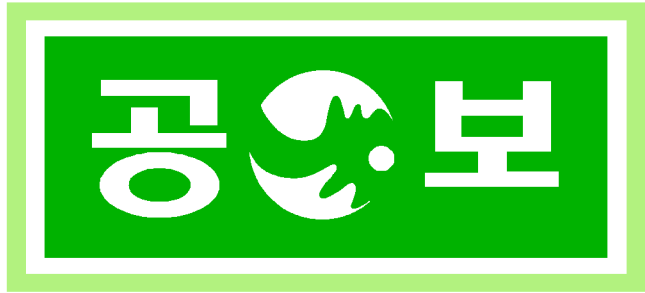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980 호 2015. 11. 12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38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39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240호[도로명주소 고시] 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-979호[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] 6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6 행정7126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-238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1월 1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상안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㈜경동도시가스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-10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 (도시가스관로 매설)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상안동 442-1, 692-2, 692, 1215-25, 1215-27, 1215-28번지

나. 면적 : 일시 165㎡, 영구 31㎡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일시 : 2015. 11. 12. ~ 2015. 12. 31.

영구 : 2015. 11. 12. ~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239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1월 1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시례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서현희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67번지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토지의 점용(재해예방용 구조물 설치공사를 위한 진입로)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가대동 908번지, 시례동 659번지

나. 면적 : 133㎡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2015. 11. 12. ~ 2016. 3. 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24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1월 1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90(효문동)의 1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11. 1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호문동 619-1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290(호문동)	2015-11-12	영포항개항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1-03-22	
2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신하지구 158 10L	울산광역시 북구 신하중앙3로 2(신하동)	2015-11-12	신하지구 중앙을 지나가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4-05-07	
3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242-3	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12(무룡동)	2015-11-12	예전 지명인 달곡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4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4-2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로 4(중산동)	2015-11-12	법정동명칭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13-12-30	
5	울산광역시 북구 화북동 1464-2	울산광역시 북구 화산중앙로 90(화북동)	2015-11-12	주민부락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6	울산광역시 북구 상인동 330-12	울산광역시 북구 신대1길 25-12(상인동)	2015-11-12	기존 지명인 신대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지방경정 330 3-330-12
7	울산광역시 북구 상인동 330-3	울산광역시 북구 신대1길 25-14(상인동)	2015-11-12	기존 지명인 신대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8	울산광역시 북구 산해동 521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삼하1로 1(산해동)	2015-11-12	강동삼하지구를 지나가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4-05-07	
9	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3-1외 26필지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새타길 100(상안동)	2015-11-12	기존 자연마을인 시례새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10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72-9외 17필지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새타길 142(시례동)	2015-11-12	기존 자연마을인 시례새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11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433-59외 2필지	울산광역시 북구 신일로 754(명촌동)	2015-11-12	울산의 상징을 활용해서 기지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6-18	
12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75-2	울산광역시 북구 상평5길 24-7(연암동)	2015-11-12	상평마을을 강조해서 상평리라 불려 상평마을의 유래가 되고 길제라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13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611-1	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길 28(매곡동)	2015-11-12	기존 자연마을인 신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5 - 979호

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1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폐지이유

- 현행 도로교통법 제3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(전문개정 2011. 6. 8.)
-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이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(전문개정 2011. 6. 8.)
-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(위임 및 위탁)의 규정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(2012. 9. 22.시행)

2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」 폐지안

3. 폐지규칙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.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.
- 다. 물가대책 심의 : 해당없음.
- 라.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.
- 마. 입법예고 사항 : 2015년 11월 중

5. 의견제출

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0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교통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
 - ☞주소 : 우)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
 - ☞전화번호 : 052-241-7961, 팩스번호 : 052-241-7969

울산광역시 복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안

울산광역시 복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